

(□ 국민, ■ 공무원) 자체우수제안 추천서

제안제목	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			
주 제안자	성명		생년월일	
	소속과 직급 (공무원인 경우)		기여도(%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)		전자우편주소	
공동 제안자	성명	생년월일	소속과 직급 (공무원인 경우)	기여도(%)
제안 개요	제안 분야	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일반행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재정경제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보건복지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사회문화		
	현황과 문제점	○ 보도에 설치된 맨홀, 가로수 보호대 부분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		
	개선방안	○ 보도에 맨홀, 가로수 보호대 등의 표면도 보도의 표면과 같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하도록 규정		
자체 심사 결과	추천의견	○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필요		
<p>「제안 규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.</p> <p align="right">2022년 월 일</p> <p align="center"> 행정기관의 장 직인 </p> <p align="center">행정안전부장관 귀하</p>				
<p>※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				
첨부서류	1.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. 그 밖의 참고자료			

추천제안 심사안건 요약서

연번	제안명	제안 및 실시내용(실시계획)
3	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	<p>< 제안내용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거 보도포장 자재는 표면이 거칠어 미끄럼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었으나, 최근 건설 트렌드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매끄러운 재질의 각종시설물*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임. * 맨홀, 수목보호대, 바닥 조명, 제수변 등 ○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[별표1]의 3. 가. 2)에 “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” 규정하고 있으나, 보도 포장만을 의미하는지 명확치 않아 맨홀 등 시설물은 철재, 석재, 플라스틱류 등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. ○ 이에 따라, 가로수 보호판 및 각종 맨홀(철재) 등은 마찰력이 적은 재질로 설치되어 보행자, 특히 교통약자들의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. * 국내에서 연간 낙상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80만명 이상(2018년, 건강보험심사평가원) <p>< 실시계획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 : '22.7월 *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-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(안) 공포 : '22.12월 ○ 낙상사고 사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0대 여성인 B씨는 ○○시의 한 보도 위에 설치된 가로·세로 60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맨홀 덮개를 밟았다가 미끄러져 허리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으며,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음.
참고	제안하게 된 사연 (아이디어 발상 계기, 당시 상황등)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배수 맨홀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가로수 보호대</p> </div> </div>